

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,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'17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, 인근에 청년 창업꿈터 2호점이 추가 설립할 예정으로
- 나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, '적정'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의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청년창업꿈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)
 - 신홍합 창조밸리 거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
 - 신촌,홍대,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
 - 청년창업꿈터 2호점 조성 및 운영계획
 - 추진 필요성
 - 주거와 보육이 동시에 필요한 최적화된 창업환경 제공을 위해 창업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청년창업꿈터 운영
 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 -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, 관리, 홍보 및 교류·협력사업
 -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- 청년창업꿈터 시설관리 운영
 - 안전대책 수립, 시설물 안전관리
-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

라. 민간위탁 개요

- 위 치 : 서대문구 창천동 13-90 (신촌역 인근)
- 건축규모 : 연면적 828.09m²
- 시설개관 : '20.2월 예정 (* '20.1월 청년창업꿈터 1호점 민간위탁 종료)
- 기 능 : 공간제공, 보육 프로그램 운영, 사업화 지원 등
- 보육규모 : 독립형 보육실 18개실
- 소요예산 : 535백만원 ('20년 기준)
-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개관 준비 기간을 포함하되, 차기 민간위탁시에는 2년으로 함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시설별 세부내역

시 설 명	청년창업꿈터 1호점	청년창업꿈터 2호점
위 치	서대문구 창천동 13-90	서대문구 창천동 13-100
건축규모	연면적 348.6m ² , 지하1층/지상3층	연면적 479.49m ² , 지하1층/지상4층
시설개관	'17.11월	'20.2월 예정
보육규모	독립형 보육실 8개실	독립형 보육실 10개실 내외
위탁기간	2년('20.2월~'22.1월)	2년4개월('19.10월~'22.1월)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창업꿈터 운영

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제2항

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

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0년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투자창업과 창업시설운영팀 백청간(☎2133-4882)